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안내문

□ 사업내용

-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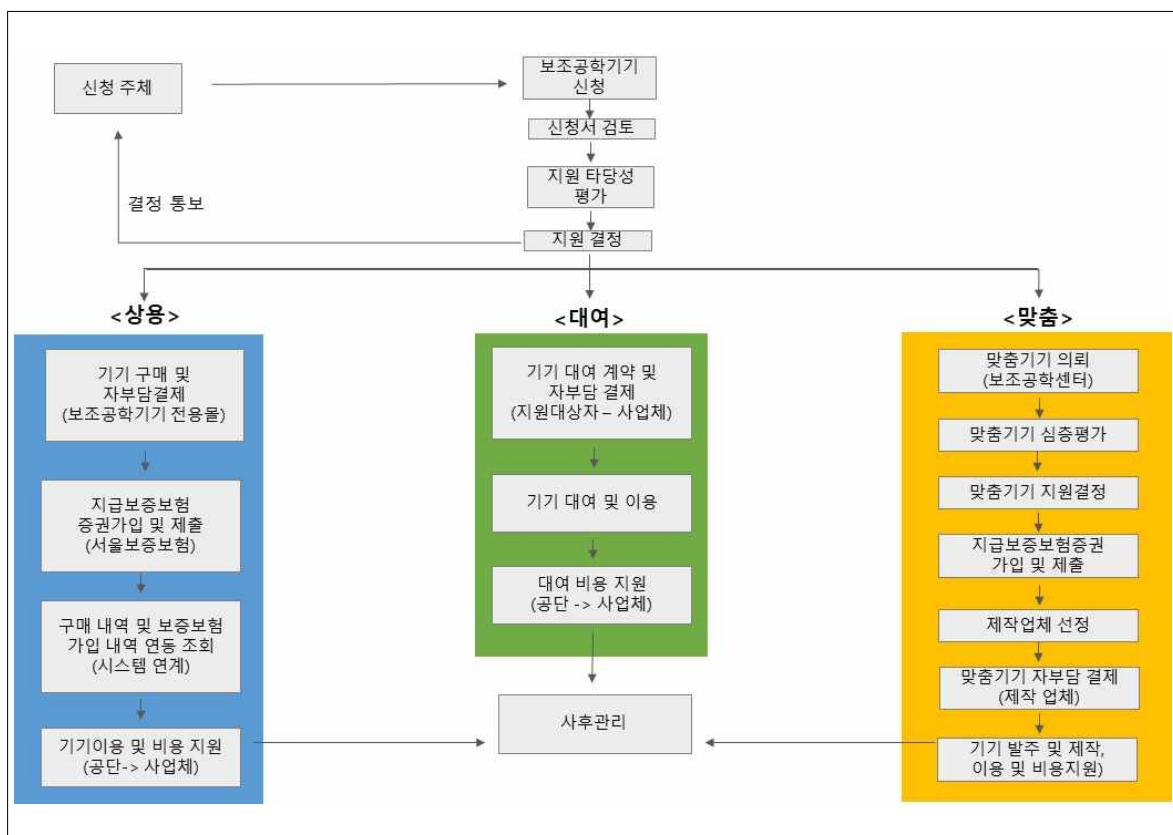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한 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 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및 지원 초과액은 신청인이 부담

□ 지원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 사업추진체계



1.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격

1-1. 보조공학기기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 ① 장애인 근로자, ② 장애인 공무원, ③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④ 장애인인 사업주이면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로 계약 형태(정규직, 인턴 등)는 상관없으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택배기사 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장애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합니다.
 - 단, 공무원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 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 단,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장의 경영주가 아닌 곳에서는 직접 신청 불가합니다.
 - (장애인 사업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는 본인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인 사업주의 본인에 대한 지원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하여야 합니다.

1-2. 중·경증 장애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19.7.1부터 「장애인복지법(이하 “복지법”）」 적용 중증장애인의 기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적용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복지법) 기존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기존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급)”로 단순화
- (장고법) 기존 “중증장애” 기준 그대로 유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존	변경 후	중증장애인의 기준 변동 없음	
1~3급	심한 장애	중증장애인 인정기준 (장고법 시행규칙 제2조)	*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지체(상지 제외) 장애는 기존 2급 이상 장애정도를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4~6급	심하지 아니한 장애		* 그 외 유형은 기존 3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이에 따라,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복지법과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시길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2-1. 보조공학기기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참고1 참조)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https://esingo.or.kr> (포털 검색어: 이신고)

* (장애인) <https://hub.kead.or.kr> (포털 검색어: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2-2. 보조공학기기 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 법정서식인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함께 ①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등), ②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첨부서류의 제출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사업주(5인 미만 사업체의 운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기에 신청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사업주 신청은 지원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3. 보조공학기기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예산 마감되기 전 까지 연중 상시 진행합니다.
 - 예산은 지사별로 다르기에 신청에 앞서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또한, 1월과 12월은 예산 배정 및 마감 문제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는 무엇인지?

- 6품목 380개 기기(기기 품목 및 개수 변동 가능) 지원되며,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가 달라 사전 확인 필요 필요합니다.
 - 특정 품목군은 특정 유형의 장애인만 지원 가능합니다.(예: 수어영상전화기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가능)
 - 지원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유형별 제한, 판매 업체 등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전용몰(<https://atkeadshop.c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홈페이지(<https://kead.or.kr>)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2024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 다운로드

2-5. 보조공학기기는 얼마나 지원 가능한지?

- 장애인고용법상 경증장애인은 1천 5백만 원, 중증장애인은 2천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위 금액 한도는 필요시 지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6. 보조공학기기 신청해도 부지원 결정될 수 있는지?

- 관할 지역본부/지사 담당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기기와 다른 기기가 결정되거나 부지원 결정될 수 있습니다.

2-7. 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지?

- 지원 대상자는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전용물 운영사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명 서류 제출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본인부담금 산출 공식
 - 제품가격 13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10%
 - 제품가격 130만원 초과 : 130만원 x 10% + 130만원 초과분 x 5%

2-8. 신청서의 맞춤형 기기·장비 지원과 기기 장비·구입비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공단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과 상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상용 보조공학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보조공학기기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기기입니다,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신청 접수는 관할 지사에서 진행하나, 실제 제작은 보조공학센터(서울 영등포 소재)에서 진행합니다.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관할 지사 담당자와의 상담이 완료된 이후 보조공학센터 직원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용 보조공학기기) 공단과 계약 체결한 보조공학기기 업체에서 판매하는 보조공학기기입니다.
 - 상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는 마찬가지로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이 완료된 이후 판매업체에서 지원 대상자에게로 배송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요약

- ① (공단) 기기 신청 접수 → ② (공단) 기기 지원 여부 결정 → ③ (장애인, 사업주) 본인부담금 10% 전용몰 운영사로 결제* → ④ (장애인,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가입 → ⑤ (공단) 지원 대상자 지급보증보험가입 확인 후 판매업체에 기기 발주 → ⑥ (판매업체) 물품 배송 → ⑦ (공단) 보조공학기기 납품·수량 확인 사실서 수령 후 구매확정 처리 → ⑧ (공단) 전용몰 운영사로 지원금 90% 송금 → ⑨ (전용몰 운영사)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기기 금액의 100%)을 판매업체로 송금

3. 보조공학기기 결정 관련

3-1. 신청 이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신청 이후 관할 지사 담당자가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며 지원 타당성 평가를 시행합니다.
 - 평가는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평가 이후 지원 결정 여부를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합니다.

3-2. 보조공학기기 결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 공단 담당자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결정하면, 지원 대상자는 ①본인 부담금 납부(설명자료 2-7 참조), ②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납부 이후 가까운 SGI서울보증에 내방하거나 SGI서울보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합니다.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절차와 관련된 세부 질문은 공단이 아닌 SGI서울보증으로 문의해야 하고, 전국 어느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증권 가입비는 지원 대상자 부담입니다. 가입 비용만 발생하며 가입료는 최저 15,000원입니다. 지원금 1백만 원당 1.5만 원 정도의 가입료가 발생합니다.

3-3. 보조공학기기 기기 배송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

- 지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납부와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을 완료하였다면, 판매업체로부터 기기 배송이 시작됩니다.
 - 기기 배송은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완료일로부터 통상적으로 3주 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업체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차량기기는 결정 이후 직접 차량을 가지고 업체에 방문하시어 설치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업체에서만 설치할 수 있고, 업체 방문(택송 포함)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4.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이후 언제 재신청할 수 있는지?

- 공단 내부 규정에 따른 품목 별 제한 연수(참고3 참조)가 지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제한 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조공학기기의 성능 및 사양, 장애인의 근무 환경에 따른 사용 용도 등이 다른 경우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동일 품목 지원 가능합니다.
- * 지역본부/지사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외부 전문가 초빙 후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1조(지원제한)

-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보조공학기기 품목(별표1)에서 정한 동일 품목의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2. 고시 제68조제9항 및 제69조제3항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성능 및 사양, 장애인의 근무환경에 따른 사용용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사례분석회의를 통해 동일 품목을 지원할 수 있다.

4.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후 유의 사항

4-1. 고용 및 근로 유지 조건이란 무엇인지?

-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본인부담금 면제자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
-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시,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할 때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바로 환수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며, ①장애인 근로자, ②장애인 공무원, ③장애인인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일 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취직을 하면 근로관계유지로 인정합니다.
 -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 관할 지사에 승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받았던 기기의 이용 장애인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 유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2. 환수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지원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지원 대상자가 2년의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취소가 될 때 공단은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합니다.
- 지원금 환수 이후 지원받았던 기기는 지원 대상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 환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 고용의무기간(2년:730일) × 고용의무미이행기간(일 단위)

* 예시: 1,000,000원 ÷ 730일 × 365일 = 500,000원

4-3. 사후관리란 무엇인지?

□ 공단은 2년의 고용 및 근로관계 유지 의무 기간에는 반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선 또는 대면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고용 및 근로 관계 유지 여부와 기기 상태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4-4. 부정수급 관련 유의 사항

□ 본인부담금을 판매업체가 대납하고, 이러한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 등 부정수급의 경우 공단은 해당 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지원금 및 해당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결정 취소시 결정 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지원이 제한되어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어떠한 기기도 신청 불가합니다

5.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

5-1. 지원 이후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왜 발급되는 것인지?

- 지원 대상자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보조공학기기를 구입 및 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리하여 공급자(보조공학기기 판매업체)는 공급받는 자(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하여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5-2.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개인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가 통상적으로 발급됩니다.

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1. 목적	사업자 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정산	개인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정산
2. 발급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거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 발급
3. 발급 의무	거래금액 1만원 이상	거래금액 1원 이상

- 예외적으로 사업자도 지출증빙의 용도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소비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수령시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 소비자는 발급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관련 안내

6-1.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인가요?

-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은 공단이 외부기관(주식회사 에니아소프트)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보조공학기기 관련 사이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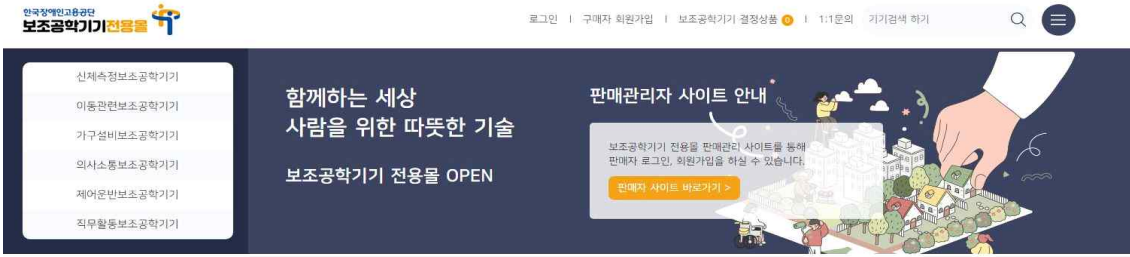
* 사이트 주소: <https://atkeadshop.co.kr>

- (정보제공 기능)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및 지원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또한, 회원 가입시 보조공학기기 제품 배송 조회 가능하며, 판매 업체 대상으로 문의 및 제품 후기 작성 등 가능합니다
- (부담금 결제기능) 무통장 입금이 아닌 가상계좌·카드 결제를 통한 부담금 납입 기능을 제공합니다(회원가입 필수)

6-2.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에서 바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전용몰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내방하시거나 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을 하신 다음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공학기기 전용물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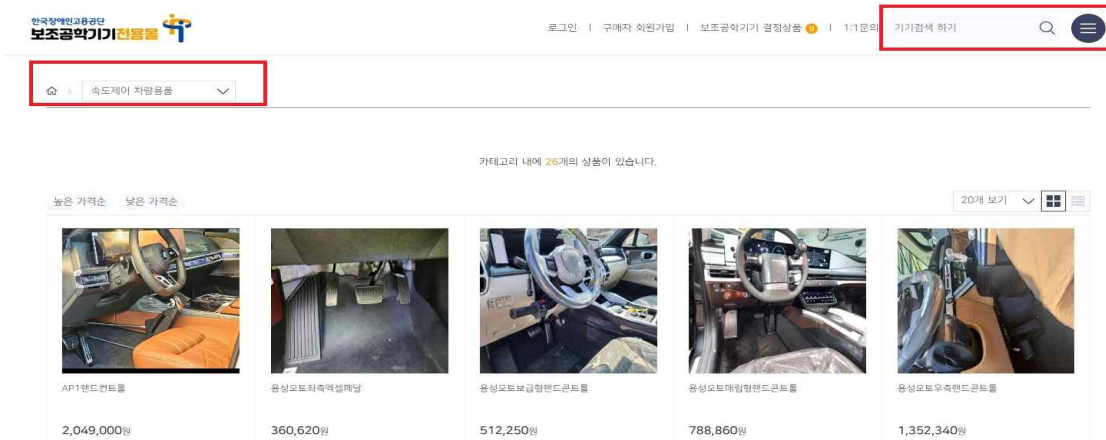
상용기기



○ 보조공학기기 전용물 회원 정보 내 배송 정보창

배송시작 (경과일)	수취인	판매자	상품정보	수량	상품금액	지원금	본인부담금	배송정보
2024-08-30 11:15:11				1개	394,580원	355,122원	39,458원	배송완료 직접수령 송장번호 수정
2024-08-29 16:53:14				1개	450,780원	405,702원	45,078원	배송중 로젠택배 (38875205331) 송장번호 수정

○ 보조공학기기 전용물 기기 검색창



7. 기타 문의 사항

7-1. 신청 전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조공학센터에서 일부 기기 체험 가능합니다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5(타임스퀘어 오피스A동) 9층 보조공학센터
 - (시간) 매주 월~금 10:00 ~ 17:00(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연락) 02-6321-8400
 - (기타) 입장료는 무료이며, 견학 예약 우선으로 가능합니다.
- 거리로 인해 공단 보조공학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보조기기센터* 예약후 일부 기기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위치: https://knat.go.kr/knw/home/knat_map.php 참조(또는 1670-5529 연락)
 - 단, 보조기기센터는 공단이 아닌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공단과 지원 기기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7-2. 공단 말고 다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없나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교육청	지방보훈청	시·군·구(방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인터넷)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지원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의료급여)지급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재활보조기기지원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지원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1인사업자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장기요양수급자(1~5급)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 및 차상위	산재보험가입자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장애인	1인장애인사업주
지원상한	기기별상이	160만 원	기기별상이	200만 원	기기별상이	- (대여)	등급별수당상이	기기1개	500만 원
자부담	기기지원상한액의 10%	15%	없음	없음	건강보험대상자 10%	시도별상이	-	제품가격의 20%	제품가격의 20%
자부담경감내용	기초생활, 차상위부담금면제	보험료감경대상자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면제	-	-	의료급여대상자부담금면제	-	-	기초생활, 차상위제품가격의 10%	없음

참고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별 관할구역

※ 전국 대표번호 ☎1588-1519

지역본부

기관명	기관연락처	소재지	관할구역
	02-6320-7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산업단지 제외))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지사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북부지사	02-6312-53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인천지사	032-242-100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지사	052-226-100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관할구역
	031-850-4500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경기동부지사	031-600-0200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서부지사	031-500-2410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강원지사	033-737-6620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충북지사	043-230-6400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남지사	041-629-6000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제외)
전북지사	063-240-2400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남지사	061-983-1800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제외)
경북지사	054-450-3000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산업단지 제외) 제외)
경남동부지사	055-225-8006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김해시)
경남서부지사	055-922-1900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진주시,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제주지사	064-710-5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기관명	기관연락처	소재지	관할구역
보조공학센터	02-6321-8400	서울특별시	전국

	중분류	소분류	설명	제한연수
04.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measuring, stimulating or training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04 33 보조 공학기기	04 33 03 옥창에방방석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키고 하중을 재분포 시키는 기기	3
		04 33 04 옥창에방용 등쿠션 및 패드	등 부위의 취약 부분에 가해지는 하중을 재분포 시키는 기기	3
12.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relating to personal mobility and transportation)				
	12 12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12 12 05 속도제어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차량에 부착하여 속도를 조절하거나 멈추는 것을 보조하는 기기	5
		12 12 07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차량에 추가하여 방향 조절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기기	5
		12 12 08 부가 기능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조향과 속도조절을 제외한 차량의 부가기능을 조작하는 기기(세컨더리컨트롤)	5
		12 12 09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안전 유지를 위해 탑승자를 특정 위치에 고정하는 기기	5
		12 12 12 차량 내 착석용 좌석 및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차량 내 좌석에 앉고 일어서기를 보조하거나, 주행 중 탑승자의 앉은 자세를 지지하는 기기	5
		12 12 18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휠체어 탑승자의 차량 승하차를 위한 기기	5
		12 12 21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사람이 타지 않은 휠체어를 차량 위 또는 내부에 싣는 기기	5
		12 12 24 휠체어 고정용 보조공학기기	차량 내에 휠체어를 고정하는 기기	5
		12 12 27 차대 및 차체 개조	장애인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접근성, 사용성 또는 편안함을 향상하기 위하여 차량의 새시, 프레임 또는 기타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	5
	12 12 90 기타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	그 외 분류되지 않는 기타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	5	
	12 22 수동 휠체어	12 22 03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 휠체어	사용자가 양손으로 밀어 추진하고 조종하는 휠체어	6
	12 23 동력 구동 이동기기	12 23 03 수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수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동휠체어	6
		12 23 06 전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전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동휠체어	6
	12 24 휠체어 액세서리	12 24 09 수동 휠체어용 추진 장치	외부 동력으로 휠체어를 추진하기 위해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기기	6
		12 24 24 작업용 전동휠체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휠체어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3
		12 24 42 물건 보관 및 운반용 휠체어 부착장치	하나 이상의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휠체어에 부착하는 기기	2

중분류	소분류	설명	제한연수
	12 24 48 구동 장치	외부 동력으로 휠체어를 추진하기 위해 수동 휠체어 앞쪽에 부착하는 피벗 방식 기기	6
12 25 휠체어 착석용 액세서리	12 25 03 휠체어 등받이	휠체어에 앉은 자세 유지를 위해 부착된 등받이 또는 교체용 액세서리	3
	12 25 06 좌석 쿠션 및 깔개	휠체어에 앉은 자세 유지를 위해 좌석에 놓는 쿠션 및 기타 기기	3
	12 25 18 휠체어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휠체어에 부착하여 앉은 사람의 어깨, 몸통, 엉덩이 또는 골반 부위를 지지하거나 안정시키는 기기	3
18.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Furnishings, fixtures and other assistive products for supporting activities in indoor and outdoor human-made environments)			
18 10 의자용 액세서리	18 10 03 등 지지대	의자에 놓고 사용하는 등 지지대	3
	18 10 13 머리 및 목 지지대	의자에 놓고 사용하는 머리 및 목 지지대	3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	의자 앞쪽에 놓고 사용하는 다리 및 발 지지대	3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몸통 및 골반을 지지하기 위해 의자 또는 좌석에 부착되거나 포함된 장치	3
	18 10 21 서거나 앉기 보조용 좌석 쿠션 혹은 시스템	사람을 들어올려서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좌석에 부착하는 장치	3
18 30 승강용 보조공학기기	18 30 15 휴대용경사로	서로 다른 두 면 사이의 단차를 연결하는 휴대용 경사면	8
22.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22 03 시각 보조공학기기	22 03 09 확대용 돋보기	물체의 이미지를 확대하는 기기	3
	22 03 18 이미지확대 시스템	비디오카메라에 포착된 물체의 확대된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	4
	22 03 21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는 소프트웨어	3
22 06 청각 보조공학기기	22 06 06 소리 증폭기	사람의 목소리나 주변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사람의 몸 또는 그 근처에 배치하는 기기	3
	22 06 25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원래 소리와 보조공학기기 사이의 음향을 전송하는 기기	3
22 09 음성 및 말하기용 보조공학기기	22 09 12 음성 및 말하기용 기기	음성 및 말하기 기능 향상을 위한 기기	3
22 13 읽기, 쓰기, 그리기 보조공학기기	22 13 06 쓰기판 및 독서대	읽기 또는 쓰기 자료를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독서대	6
	22 13 15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인쇄물이나 전자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4
	22 13 18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인쇄된 텍스트를 인식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스캐너 및 소프트웨어	5
	22 13 21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DAISY 콘텐츠 재생 및 전자책을 읽어 주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4
	22 13 27 수동 점자 기록 장비	특수 돌기 또는 막대를 사용하여 종이 위에 점자를 새기는 기기	3
	22 13 36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 저장, 출력하는 휴대용 장치	4

중분류	소분류	설명	제한연수
22 18 및 시각 정보의 기록, 재생, 표시용 보조공학기기	22 18 38 헤드폰, 이어폰 및 헤드셋	귀 근처나 귀 안에 위치시키는 머리 착용형 기기	2
22 21 대면 의사소통용 보조공학기기	22 21 09 대화용 장치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휴대용 및 비 휴대용 기기	3
	22 21 12 대면 의사소통 소프트웨어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3
22 24 원거리 통신용 보조공학기기	22 24 04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음성, 텍스트, 이미지 및 비디오를 결합한 의사소통 기기	4
22 28 시간, 기억 및 일정 관리용 보조공학기기	22 28 03 시계	시간을 측정하고,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	2
22 29 신호 전달, 경보, 알람용 보조공학기기	22 29 03 신호장치	소리를 불빛, 진동 등으로 변환하여 알려주는 기기	3
	22 29 12 위치 확인 및 추적 시스템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추적하는 기기	2
	22 29 15 표시용 재료 및 도구	탐색하는 대상물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기기	3
22 39 출력 장치	22 39 04 시각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대비 강화를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기	5
	22 39 05 촉각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정보를 촉각적으로 표시하는 기기	4
	22 39 06 프린터	점자 또는 점자로 변환된 정보를 출력하는 기기	4
	22 39 12 출력 장치용 소프트웨어	특정 출력 장치로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3
22 45 방향 및 위치인식용 보조공학기기	22 45 03 방향 및 위치인식용 전자기기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 위치, 방향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는 기기	3
24.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controlling, carrying, moving and handling objects and devices)			
24 13 작동 및 원격제어용 보조공학기기	24 13 18 키보드	글자 입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수키보드	5
	24 13 21 컴퓨터포인팅용 시스템	화면 포인터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고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항목을 선택하는 기기	4
24 18 상지 기능 보완 및 대체용 보조공학기기	24 18 15 조작용 스틱	컴퓨터 입력 장치 및 기타 장치를 조작하는 기기	5
	24 18 27 손 작업용 팔 지지대	손으로 작업할 때 팔을 지지하는 기기	5
	24 18 30 로봇형 조작기기	팔, 손, 손가락 기능을 대체하여 팔을 뻗고 물건을 잡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기	3
24 21 멀리뻗기 (extended reach)용 보조공학기기	24 21 03 수동 집게	멀리 있는 물건을 잡거나 쥐는 기기	3
24 24 위치잡기용 (positioning) 보조공학기기	24 24 03 위치 고정 시스템	물체를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고정하는 기기	5
28.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work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employment)			
28 03 작업용 가구 및	28 03 03 작업용 테이블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테이블 및 책상	5

중분류	소분류	설명	제한연수
	28 03 06 작업대	용접, 목공 등 특정 장비 및 액세서리가 있는 작업대	5
	28 03 09 작업 및 사무용 의자	작업 용도로 사용되는 조절 가능한 또는 고정된 의자	5
	28 03 12 작업용 스톨 및 입식 의자	선 자세에 가깝거나 선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다리가 있는 의자	5
	28 03 18 작업장 매트	작업 시 피로 및 진동 감소를 위한 매트	5
28 06 작업장 사물 운반용 보조공학기기	28 06 04 수동식 산업 운송 장비	사람이 직접 밀거나 끌어 물품을 운송하는 바퀴 달린 기기	5
	28 06 05 전동식 산업 운송 장비	근처에 서있는 사람이 전동 장치를 조작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기기	5
	28 06 06 수동식 리프팅 운반차	가까운 곳에 선 사람이 작동시켜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수동 또는 전동 리프트 장비	5
28 21 행정, 자료 저장 및 관리용 보조공학기기	28 21 09 사무 및 업무용 기기	사무 및 특정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기기	4
	28 24 03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작업 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장비	3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유사분류 품목의 연수를 적용한다.

참고3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서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2. 7. 12.>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맞춤형 6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 경증 [] 중증
	직무	직무수행 불편사항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이 주소로 신청한 기기·장비가 배송됩니다.		

지원 신청 내용	기기·장비(품목)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목록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맞춤형 기기·장비 지원 [] 기기·장비 구입비 지원 [] 기기·장비 대여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검토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결재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결정 통지
---------------	---	---------------------------	---	---------------------------	---	---------------------------	---	-------

유의사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 기간	동의 여부
SGI 서울보증보험	성함	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진행을 위한 지급보증보험 제출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2. 고지사항(고유식별정보 처리)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 기간
SGI 서울보증보험	주민등록번호	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를 근거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며, SGI 서울보증보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를 근거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3. 보조공학기기 안전·효율성 책임 여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후 발생하는 보조공학기기 자체의 결함과 보조공학기기로부터 발생하는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책임이 있으며, 공단의 책임과는 법리적으로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 모든 보조공학기기의 품질·안전·효율성에 책임이 없으므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기 전에 기기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보조공학기기 안전·효율성 책임 여부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4. 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보조공학기기 전용물 이용 납부	무통장 계좌이체 (전용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5. 기기 배송지 주소(미기재 시 사업장 주소로 배송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귀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장

(경유)

제 목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결정 통지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사업주 [<input type="checkbox"/>]장애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장애인 공무원 [<input type="checkbox"/>]장애인사업주		
	신청인 (사업체명)	김철수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888888-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지 59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결정내역						
구 분	맞춤형 기기·장비개수	기기·장비 구입 개수	기기·장비 대여 개수	제품 총액	본인부담금	지원금
신 청	0	1	0	1,000,000		
결 정	0	1	0	1,000,000	100,000	900,000

증권가입기간은 사업주 2년 2개월, 장애인 3년이며 사후관리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입니다.

■ 불임 서류: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내역

2024 9월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장 직인

부서명	보조공학부	담당자	김영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전화번호	070-111-2222
전자우편	1111@kead.or.kr	팩스	050-1111-2222

및 행정소송 안내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내역

(단위: 원)

연번	이용 장애인	품목	제품명	대여 개월	결정금액				제한 연수
					제품금액	본인부담금 (최대10%)	본인부담금 (한도초과액)	지원금	
1	홍길동	보조공학	보조공학기기	-	1,000,000	100,000	0	900,000	5
보조공학기기 결정 총금액					1,000,000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기초금액(지원금)					900,000				

※ ①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조공학기기 전용물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안내한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또한 SGI서울보증에 방문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